



의안번호	제174호
회의 연월일	2024. 12. 2. (제553회 회의)

심의
의결
사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출부서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제출연월일	2024. 11. 21.

교통기획과장, 교통기획계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심사를 마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시운행허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0375호, 2024. 3. 19. 공포, 2025. 3. 20.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에 대한 교육 과정·방법 등 세부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토의과제

없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하기 전에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는 직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④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 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3.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의 11의7과 11의8을 각각 11의8과 11의9로 하고, 같은 표에 11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7. 법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2항 제10호	8만원
---	---------------	-----

부 칙

이 영은 202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32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 ①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려는 사람은 운전하기 전에 법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자는 직전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한다. ④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된 법령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안전 관련 주의사항 3.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운전자의 준수사항 4. 그 밖에 안전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식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재, 공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통기획과	
연 락 처	(02) 3150 - 0659